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에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2) 대 표 자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장세용
- 3) 소 재 지 :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4) 출연예정액 : 15억원
- 5) 출연금 사용처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나. 주요 사업

1)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비 : 650백만원

-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시험·분석 연구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이용기업 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지속 증가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렴한 장비이용수가 적용으로 적자발생

2) 우수기업 발굴·성장 지원을 위한 임대·시설운영사업비 : 850백만원

- 잠재력 있는 지역 우수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핵심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 중이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

다. 출연의 필요성

1) 지역 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사업비 지원 필요

- 2003년부터 구축된 기술원 보유 시험·분석 장비의 57%는 5년 이상 노후화 되었으며, 시험분석 장비의 경우 97%가 노후화 되어 장비 교정 및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구됨
- 이용기업 수 증가에 따라 장비 유지보수비는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타기관 대비 평균 58% 이상 저렴한 장비이용수가 적용으로 지속적인 적자 발생
- 기업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실시로, 지역기업이 타 지역 연구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연구장비 현황 요약 >

(단위 : 대, 백만원)

부서명	장비구축현황					비고
	2013년도 이전 구축		2013년도 이후 구축		노후화율	
	장비수	금액	장비수	금액		
신뢰성평가센터	100	10,635	0	0	100 %	시험·분석
소재특성분석센터	33	4,030	2	5,153	94 %	"
첨단소재부품연구센터	31	5,091	29	6,196	52 %	공정·테스트
스마트디바이스연구센터	26	2,870	15	7,524	63 %	"
차세대통신기술센터	21	25,368	14	21,191	60 %	"
융합의료기기연구센터	0	0	97	7,627	0 %	"
합 계	211	47,994	157	47,691	57 %	

※ 노후화율(%) = 2013년 이전 구축 장비 대수 ÷ 전체 장비대수

2) 우수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임대·시설운영사업비 지원 필요

○ 저렴한 임대료 책정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발생에도 입주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상 유보

-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유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타기관 대비 최대 16% 저렴한 임대료 책정
-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으로 임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
-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임대료 현실화 및 재산정이 필요하나, 입주기업인 창업 성장보육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 유보 상황
-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 있고 우수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의 성장 보육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임대·시설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

<유사기관 임대단가 비교>

(단위 : 원/m²)

기관명	평균 임대단가(월)	비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6,065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6,822	대비 11% ↓
금오공대 창업진흥센터	7,220	대비 16% ↓

※ 임대 전용면적 기준 환산 단가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비 증가로 지원 필요
 - 건물 노후화(본원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로, 시설 영선·유지를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 유료 지원시설에 대해 사용료 감면(50%) 등에 따른 적자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제1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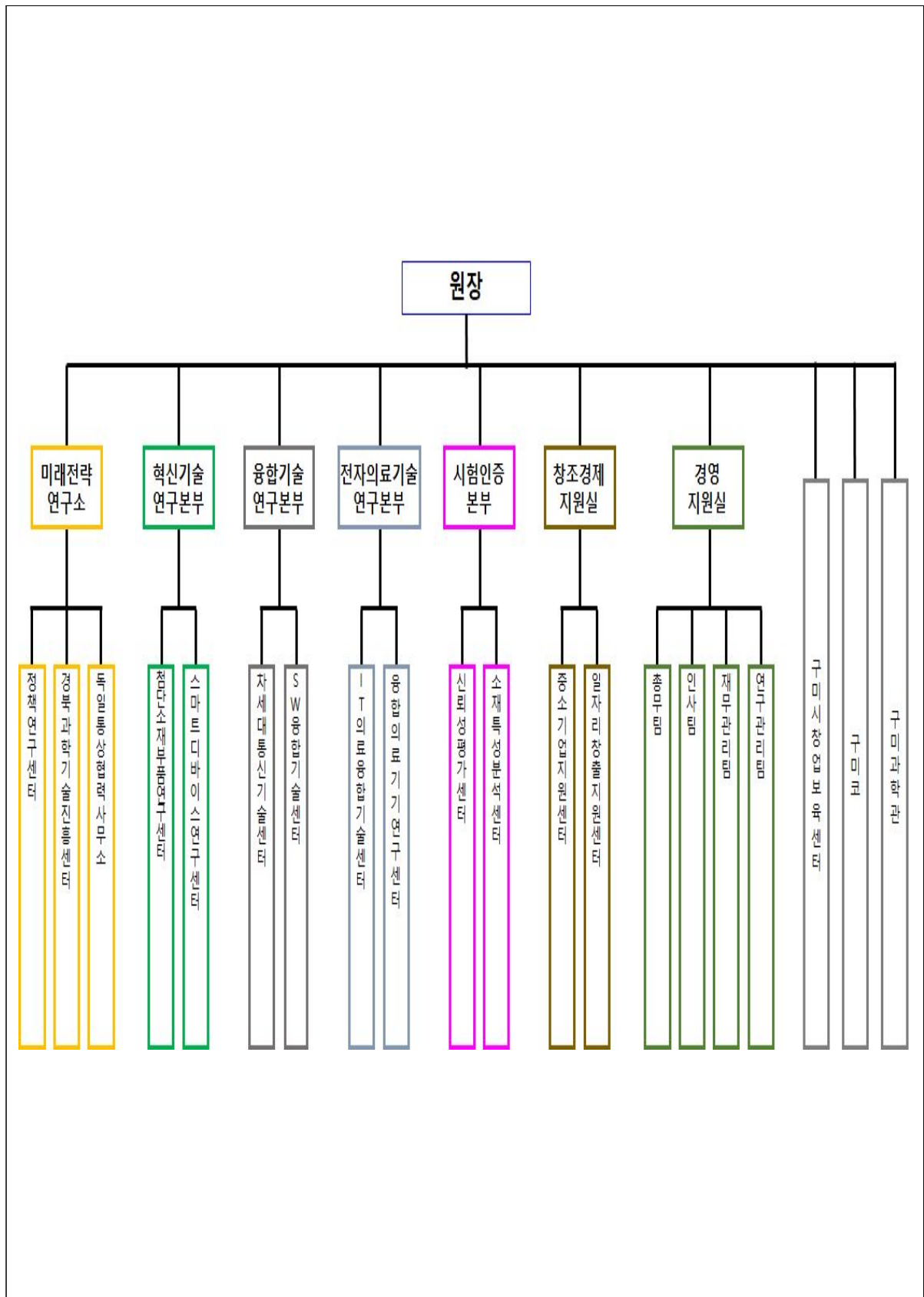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붙임)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

①기관명(주소)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소)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②기관소개	○ 지역 특화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달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③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규 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조 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④연 혁	○ 설립일자 : 2007. 7. 30 ○ 기관명칭 변경 : 해당없음	⑤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⑥주요기능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산·학·연·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		
⑦기관장 소개	○ 성 명 : 장세용 ○ 학 력 : 영남대학교(사학) 박사 ○ 경 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구경북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現)구미시장		
⑧조 직 기구도	*별첨 참고		
⑨공시책임자	○ (담당자)(소속) 총무팀 (직책·성명) 선임 정현철 (전화) 054)479-2012 ○ (확인자)(소속) 총무팀 (직책·성명) 팀장 정연욱 (전화) 054)479-2013		

[별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안 경 우
	담 당 자	박 선 경 (480-6152)